

‘26. 7.

-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-
공유재산 무상사용 및
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(안)

해 양 향 만 과

-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-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(안)

의 안	2026-66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26. 7. .

제 출 자 : 김 제 시 장

1. 추진배경

- 지난 '24. 6월,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10개 필지 대상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(안) 의회 의결 완료
- 계획부지 중 일부 토지의 묘지 이장 및 토지주 협의 지연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 필지(793m²) 제외 후 확보된 부지만으로 절차 이행
- '25. 12월 분묘 이전에 따른 잔여부지 793m² 추가 매입과 '26. 6월 전북도 기본설계에 따른 사업부지 면적 변경으로 해당 필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바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9조에 의거 김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
- 사업기간 : 2024 ~ 2027년(4년)
- 사업위치 :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일원
- 사업규모 : 9필지 / 부지면적 25,941m²(전북자치도 기본 및 실시설계중)
- 사 업 비 : 250억원(국비^{50%} 125, 도비^{50%} 125)

※ 김제시 토지매입비 별도 약 30억원 집행(토지제공 조건)

- 사업내용
 - (시설) 본관동, 실습동, 연구동, 합숙동, 임대형 실습양식장
 - (교육) 첨단 양식시스템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

※ 전북자치도 : 센터건립 및 사업소 운영 / 김제시 : 부지 제공

3. 공유재산 관련 동의 내용

- 동의내용 :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
- 동의대상 : [당초] 10필지 / 부지면적 33,173m²
[변경] 9필지 / 부지면적 25,941m²
 - 설계변경에 따른 필지 분할·제외 및 편입부지 추가
- 사 용 자 : 전북특별자치도
- 사 용 료 : 무상
- 사용기간 : 허가일로부터 5년

4. 추진상황

-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등기이전 등록(1차) ----- '24. 4.26.
-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(안) 의결 ----- '24. 6.24.
- 영구시설물 축조 관련 시↔도 간 업무협약 체결 ----- '24. 6.28.
- 비즈니스센터 부지 추가 매입 의원간담회 보고 ----- '25. 1.20.
- 비즈니스센터 부지 추가 매입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----- '25. 3. 5.
- 비즈니스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등기이전 등록(2차) ----- '25.12. 5.
-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관련 의원간담회 보고 - '26. 7.13.

5. 금후계획

-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(착공 시) ----- '27. 上

6. 기대효과

- 전북자치도 해양도시 중 전무했던 수산사업소 관내 유치
- 전국 내수면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확립

7. 따로붙임

-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(안)
- 사업 위치도 및 조감도
- 부지 상세내역
- 관련법령 발췌서
- 방침결정문

-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-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(안)

김제시가 내수면어업의 경쟁력 제고 및 청년어업·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·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추진 중인 「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」 관련하여, 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통해 양식산업의 고차원화와 정보·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에서 창업까지 원스톱 지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바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 및 제24조와 「동법 시행령」 제9조 및 제13조에 의거 김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.

1. 동의내용 :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
공유재산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
2. 소재지 및 면적 : <붙임 3> 참조
- 김제시 백산면 조종리 산189-13번지 외 8필지 / 25,941m²
3. 사용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
4. 사 용 료 : 무상
5. 사용기간 : 5년(사용허가 갱신으로 지속사용 허가)



사업 위치도



조감도

붙임3
부지 상세내역

연 번	당초 의결 내역		변경(안) 내역		비 고
	소 재 지	면적(m ²)	지 번	면적(m ²)	
계		33,173		25,941	
1	조종리 산189-1	9,441	조종리 산189-1	3,308	설계변경 제외
			조종리 산189-13	6,133	
2	조종리 산193-1	7,240	조종리 산193-1	3,230	설계변경 제외
			조종리 산193-5	4,010	
3	조종리 559-6	6,865	조종리 559-6	6,865	
4	조종리 559-18	3,704	조종리 559-18	3,704	
5	조종리 559-22	936	조종리 559-22	936	
6	조종리 559-23	224	조종리 559-23	224	
7	조종리 559-24	1,748	조종리 559-24	1,748	
8	조종리 산189-12	83	조종리 산189-12	83	설계변경 제외
9	조종리 산189-10	1,404	조종리 산189-10	1,404	설계변경 제외
10	상정리 825-9	1,528	상정리 825-9	1,528	
11	-	-	조종리 산189-3	793	추가 편입

① 사용허가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: 시행 2024. 7. 10.]

제20조(사용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: 시행 2026. 1. 2.]

제13조(사용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법인·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

② 무상사용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: 2024. 7. 10.]

제24조(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
③ 영구시설물 축조

[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: 시행 2026. 1. 2.]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(이하 “공용재산”이라 한다)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(이하 “공공용재산”이라 한다)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

지평선 넘어
새만금까지 비상하는 김제

문서번호	해양항만과 - 6015	주무관	팀 장	과 장	국 장	부시장	시 장	결 재
보존기간	년	조완호	이재	백진우	김기수	이재	정성기	
결재일자	2026. 6. 24	협 조						
공개여부	부							

새만금 해양 중심도시 김제

-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추가 매입부지 -
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(안) 추진보고



[해 양 항 만 과]